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3 선고 2021가단50293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한명옥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주지현, 장용준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성욱

변 론 종 결 2024. 6. 25.

판 결 선 고 2024. 9. 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지분 중 2122분의 221.1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의 2020. 1. 9.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0. 접수 제2077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3. 접수 제61726호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2. 15. 접수 제91567호로 경로된 가등기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지분 중 150분의 27.2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의 2020. 1. 9.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0. 접수 제2077호로 경로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 지분 중 162분의 59에 관하여 피고 B과 D 사이의 2019. 4. 22.자 시기부 매매계약(시기 2020. 4. 22.)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와 2019. 4. 24. 접수 제26605호로 경로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D, E은 분할 전 평택시 F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타운하우스형 건물(G)을 신축하여 제3자에 분양하고, 수익을 1/3씩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7. 분할 전 평택시 F 답 780㎡ 등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2015. 5. 29.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위 사업부지에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H조합로부터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15억 원의 대출을 받고, H조합에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로하여 주었다.

나. 이후 원고, D, I(E 지위 승계), J(2015. 7. 15.경 신규 참여)가 위 신축분양사업의 최종적인 공동사업자(이하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라 한다)가 되었다.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2015. 말경 이 사건 사업부지를 총 39개 필지로 분할한 후 (1) 타운하우스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관리실 등 공용부지를 위한 3 필지(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번 각 부동산1),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공동명의로 남겨두고, (2) 나머지 36개 필지는 각각 9필지씩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31. 위 36개 필지를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H조합 대출금 원금 중 11억 원을 변제하였고 H조합의 근저당권은 잔존 원리금 4억 원 가량으로 공용부지에 잔존하게 되었다.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 분양대행업체를 통해서 각자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필지에 관해 타운하우스 분양을 하였는데, 각 타운하우스 공급계약서에는 각 전용면적과 함께 공동명의로 잔존하는 공용부지 일부(도로 54.1㎡, 편의시설 3.8㎡)가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은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에게 공용부지 중 도로부지와 관리소 부지의 분양공유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 하였다.

다. 이후 D이 자신 명의 타운하우스 부지를 개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단독으로 2018. 5. 28. 원금 잔액 중 3억 3,000만 원 및 이자 1,334,790원 합계 331,334,790원, 2019. 6. 7. 원금 잔액 7,000만 원 및 이자 132,030원 합계 70,132,040원을 각각 변제하여 공용부지에 잔존하는 H조합 대출원리금 잔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라. D은 원고가 H조합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기 전후로 공용부지 지분을 매도하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처분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아래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과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 한다).

○ 별지 목록 순번 1번 부동산 : 공용부지(D 지분 221.1/2122), 갑 제1-10, 11- D과 피고 B 사이의 2020. 1. 9.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D 지분 전체 221.1/21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10. 접수 제207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이후 이 중 110.55/2122에 관하여 2020. 8. 31.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202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6172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 경료

[이후 2020. 12. 15. 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경락되어서 D의 18/2122 지분이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접수 제91567호로 M에게 이전되었다.]

○ 별지 목록 순번 2번 부동산 : 공용부지(D 지분 27.2/150), 갑 제1-12

- D과 피고 B 사이에 2020. 1. 9.자 매매예약에 기하여 D 지분 전체에 관하여 수원지방

법원 평택지원 2020. 1. 10. 접수 제207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별지 목록 순번 3번

부동산 : 공용부지(D 지분 59/162), 갑 제1-13

- D과 피고 B 사이의 2019. 4. 22. 매매(2020. 4. 22. 시기)에 기해 D 지분 전체에 관

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4. 24. 접수 제2660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

마. 원고는 2021. 7. 28. D을 상대로 원고가 변제한 H조합 대출원리금 잔액 중 D 지분 1/3 상당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85919)를 제기하여 2023. 12. 2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33,333,333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8.부터, 나머지 23,333,333원에 대하여는 2019. 6. 7.부터 각 2021. 7.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D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3038) 진행 중이다. 이하 ‘별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쟁점 정리(사해행위취소청구권, 2024. 6.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D에 대한 H조합 대출원리금 잔액 중 D 지분 1/3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과 수익자 피고 B 사이의 공용부지 내지는 공동명의 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각 처분행위에 터잡은 가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다(전득자인 피고 C의

가등기 포함). 이와 관련한 쟁점은 아래와 같다.

①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 사해행위 해당 여부(사해의사 존부) : 공용부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D 지분이 D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는 책임재산인지 여부

③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3. ② 쟁점에 관한 우선적 판단

[① 쟁점의 경우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 존부의 경우 별건에서 이미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하는 주장(별건 선고 전에 이루어진 주장이다) 또한 별건에서 다투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별건 선고 후 이 사건에서 이를 다시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③ 쟁점의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사해행위 취소의 적법 요건이기는 하나,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 존재까지 안 날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본안의 쟁점인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법률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내지는 채무자 D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제척기간 도과 여부의 쟁점이 맞물리는데 본안 쟁점이 오히려 더 선결적인 경우라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우선적 쟁점인 ② 쟁점을 우선하여 판단한다.]

#### 가. 법리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하여 매도인은 매수인 수인에게 그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서 매도인이 소유권 전부의 이전의무를 그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등 참조), 반면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그와 조합 사이에 채권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여 그로 하여금 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내지 그 사용을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동업계약을 이유로 조합계약 당사자 아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고 할 근거는 없으므로,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체에 미친다."고 규정하고(이는 물권법상의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따라서 조합체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민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민법 제2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조합체의 합유물이 되고(이는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조합체가 부동산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물론 소유권이전등기를 요한다.), 다만,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그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316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3)를 보태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원고, E, D은 2015. 4. 7. 토지주인 N, O, P, Q, R과 사이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부지(분할 전 F 등)를 매매대금 12억 7,050만 원(계약금 1억 2,705만 원 계약 당시 지급, 잔금 11억 4,345만 원 2015. 5. 29. 지급), 인도기일 2015. 5. 29.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사업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인 원고, E, D의 각각 취득 지분이 특정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었다.

### 매도특약사항

1. 잔금예정일자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2. 잔금지급일자에 소유권이전 등기작업을 동시에 한다(매매용 인감증명 등 사전준비 완료).
3.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이전에 미등기전매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
4.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시점 이전에 해당 토지 6필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다.
5. 잔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점 이전에 해당 토지 6필지에 옹벽토공사, 흙메우기 및 건축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 매수특약사항

1. 경계측량은 지주 측에서 신청하여 주기로 한다.
2. S 아랫측 보강토공사는 매도인 측에서 허락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준다.

2) 원고, E, D은 위 매매계약 잔금지급일이자 인도기일인 2015. 5. 29.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으나, 잔금 지급을 위한 H조합에 대한 대출 채무자 명의는 원고 단독으로 하였고, 위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D 지분에 관하여 2017. 4.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로한 뒤 2018. 8. 10. D을 상대로 하여 그 본등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D은 위 매매예약이 원고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임을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28423(본소), 2019가단215233(반소)}, 1심 법원은 2019. 10. 10. 위 2017. 4. 24.자 매매예약은 타운하우스 공용부지 등으로 사용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가압류 등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될 것을 염려하여 통정허위로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D의 반소를 인용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10. 16. 항소 및 2021. 2. 4.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2021. 2. 5.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패소판결 확정 후 2021. 2.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21. 7. 28. 구상금을 구하는 별건 소를 제기하였다.

#### 다.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원고, E, D이 타운하우스 신축 및 시행 사업 동업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체를 결성 한 후 이들 전원이 매수인이 되어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자금 조달도 조합원 개인 재산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조달하기로 한 것인 점, (2)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다수이나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 외 1차례 잔금만을 예정하였으며 특약으로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 이전 매매대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 지주인 매도인이 경계측량을 신청하여 주고, 매수인이 일부 보강토 공사를 잔금기일 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 자체로 원고 등 매수인들이 매매대상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사업자금 등을 대출 받고 필지 정리를 하여 건축을 할 예정임이 계약 문언만으로도 드러나는 점, (3)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에다 매도인들이 사실상 매매대금의 대부분인 잔금 전액을 토지 인도기일에 매수인 중 1인인

원고의 대출 실행에 의해 지급받은 정황으로 미루어 지주인 매도인들이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매수인들 전원인 원고, E, D의 동업사업 목적을 위한 것으로 알았다 봄이 상당하며, 매수인들 각각에게 단순히 토지 공유지분을 매도하는 것이라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도리어 희박하다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 E, D의 각 지분등기는 G 건축 및 분양사업 조합체를 결성한 뒤 사업부지를 매수하되 그 등기를 합유등기가 아닌 단순 공유등기로 각 조합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지주인 매도인들도 그와 같은 정황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잔존하는 각 지분등기는 조합의 잔여 채무 정산 및 추후 수분양자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을 염두에 두고 분할 후 각 9필지를 조합원 단독명의로 이전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기존 명의신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 E, D 등은 지분등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루어진 D 명의 지분등기의 유효 내지 해당 지분이 D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D이 행한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가 공용부지에 잔존하는 대출원리금을 단독으로 변제한 이상 D은 그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 D의 공용부지 처분행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그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애초 사업부지에 합유등기를 경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각각 공유지분등기를 경로하는 것을 선택한 이상 D의 사업부지 개인적 처분행위는 원고 등 타운하우스 분양사업 동업 조합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이고, 이를 조합체 내부약정에 기한 사업부지 위 대출원리금 구상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 등을 주장하여 등기부상 지분등기를 신뢰하고 이에 터잡아 가등기 등을 경로한 D의 채권자인 피고 B 등에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 원고가 이 사건 타운하우스 건축 및 분양 동업사업에 있어 원고가 공용부지에 잔존하는 대출원리금을 단독으로 변제하고, D의 공용부지 처분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 등을 경료하는 등 D의 자산 악화로 인하여 분양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2016년경부터는 D의 자산 악화 상태를 알았다는 것이고, 나아가 원고는 D의 자산 악화 상태를 우려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D 지분에 관하여 2017. 4. 2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뒤 2018. 8. 10. D을 상대로 하여 그 본등기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이 사건 소 제기 직전까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알았다고 볼 여지도 크다(다만 이 부분 증명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으나, 피고들은 주장 및 주장을 명료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원고는 위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원정

별지

- 1) 다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토지는 추후 수분양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 타운하우스 공용부지(도로 내지 관리실 부지)이나, 같은 목록 기재 순번 3 토지의 경우는 공동명의로서 H조합 근저당권이 잔존하기는 하나 공용부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2) 소장에 기재한 예비적 청구원인인 ‘배임적 재산행위의 무효’ 주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해당 청구원인에 상응하는 청구취지를 특정하지도 아니한 이상 철회한 것으로 본다.
- 3) 참고자료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각 토지대장